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6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 8. 1. 자 조직개편으로 관광진흥센터가 관광마케팅팀으로 전환되어 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3장 관광진흥센터 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 ~ 제17조)

- 관광진흥센터 이전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업무 관련 규정 삭제

나.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2조 ~ 제22조의4)

-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제3장을 삭제함에 따라 안내소 운영지원 내용 수정 및 수탁자 선정, 협약 체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신설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2. 6. ~ 2. 26.(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03.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관광진흥센터(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을 “업무를 관광 분야에”로, “있다”를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1.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제25조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3.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명
- ③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④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3(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과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5. 안내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관광진흥센터 설치) 구청장은</u> <u>은 구의 관광관련 사업을 체계</u> <u>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u> <u>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u> <u>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u> <u>설치·운영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u> <u>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u> <u>사, 분석, 연구, 계획의 수립</u> <u>등에 관한 사항</u> <u>2.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u> <u>에 관한 사항</u> <u>3.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u> <u>사항</u> <u>4.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u> <u>· 관리에 관한 사항</u> <u>5. 관광브랜드상품 및 수익형</u> <u>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u> <u>6. 각종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u> <u>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사업에</u> <u>필요한 자원 확보</u> <u>7. 구에서 설치한 각종 관광안</u> <u>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8.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
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광 분야에 전
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
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 기준) 구청장
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
성 및 사업수행 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
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
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3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업무 소관국장 및 과장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3.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광 분야 전문가 4명

③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삭 제>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기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심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과 주소

<삭 제>

<삭 제>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
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
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
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
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

<삭 제>

<삭 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센터는 안내소로 본다.

<신 설>

제1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

----- 업무를 관광 분야에 -----

----- 있으

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수탁자 선정 등) ① 수

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1.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제25조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3.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명

③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참

<신 설>

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3(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과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5. 안내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관광과 배현주 (☎ 3153-8653)